

회수 · 재활용률 기준으로 요율 정해야

이 회수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재활용과 과장

1. 예치금제도의 도입배경

근래에 들어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대량생산·대량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가 사회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특정제품·용기에 대한 회수·처리비용 예치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용기류, 타이어 등 7종 17개 품목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새로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92. 12. 8)됨에 따라 현행 예치금제도의 개선과 부담금제가 도입되어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 현 예치금 제도에 따른 문제점

지난 1년간 269억원의 예치금이 납부되었으나, 수거체계·재활용산업 여건이 열악한 현실로 인해 그 환

률이 약 7%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며, 더욱이 예치금제 개선(안)에 따라 예치금 부담이 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 열악한 국내의 경영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예치금제 개선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어 기업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예치금 요율 산출시 그 산출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실정으로, 유리병의 경우 실제 적용되는 품목의 대부분이 100ml 내지 150ml 용기이나 예치금제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350ml 맥주병)을 선정, 처리비용이 산출 되어진 것은 모순이라 생각된다.

3. 재활용 추진개요

유리병은 특성상 재활용이 용이하고, 성분이 흙과 동일하여 환경친화적

인(environmentally friendly) 물질로 분류되어 오래전부터 기존의 수집상 등을 통하여 폐병을 회수, 유리병의 원료로 사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 수거체계의 붕괴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폐유리재활용추진위원회를 설립(91. 1. 10)하여 지역별 파유리상과 연계, 폐유리 회수·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회수·재활용을 위한 폐유리 재활용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4. 예치금제에 대한 제안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감량과 자원 절약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단지 처리비용 산출을 근거로 한 요율산정이 아닌 회수·재활용에 따른 차등을 두어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과, 대체가능 용기별 회수·재활용가능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이에 미달되는 용기에 한해 예치금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의 실제적인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1회용 용기의 범람으로 인해 이미 환경선진국(독일, 스위스, 덴마크 등) 대부분에서 1회용 용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사용 용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폐기물 감량과 자원절약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재사용 용기의 사용이 확대,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용기별 재활용률 비교(91)

(단위 : %)

구 분	유리병(1회용)	캔	종이팩	페트병	비고
회수·재활용률	45.1	8	4.5	거의 미미	재사용 유리병의 회수율은 90% 이상